

법령단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애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애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물질을 말한다. 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 ②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4.\]](#)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5. 물질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6.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별지 제3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 ④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4. 13.]

| | | |
|--|--|--|
| <p>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p> <p>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p> <p>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p> <p>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p> <p>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p> <p>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p> <p>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 | |
|--|---|
| | <p>제2조의2(제조신고 등) ① 법 제5조의 2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1.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이하 "제조신고 확인증"이라 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 <p>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06. 12. 29.]</p> |

| | | |
|---|--------|---|
| | | <p>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신고 확인증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제3조 삭제 | 제3조 삭제 | <p>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 삭제 | <p>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p>[전문개정 2012. 4. 13.]</p> |

| | | |
|---|---|---|
| <p>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p> <p>제4조의2(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p> <p>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6. 4., 2022. 2. 3.> ④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6. 4., 2022. 2. 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5조 삭제</p> | <p>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p>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5조의2(양도신고)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 | | |
|---|---|---|
|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6조(제조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료·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 2. 각 반응기(反應器)의 용적(容積)이 100리터 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각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 이하이며, 연속가동 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것 <p>[전문개정 2012. 2. 22.]</p> | <p>제6조(폐기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p>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6조의2(제조신고)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p>[전문개정 2012. 2. 22.]</p> | |
| <p>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p>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 <p>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p> <p>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3.]</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2. 2. 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p> | <p>제7조(수입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 <p>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료·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 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삭제<2018. 4. 3.></p>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 <p>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4호 · 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 · 기록 · 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자가 다시 제2호 ·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p>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 · 인수 신고)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 ·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2.]</p> | <p>제8조(수출입물품 인도 · 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 ·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전문개정 2012. 4. 13.]</p> |
|--|--|---|

| | | |
|--|--|--|
| 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개정 2013. 3. 23.></u>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u>[전문개정 2011. 4. 14.]</u> | | |
|--|--|--|

| | |
|---|--|
| <p>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2. 2. 3.></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p> <p>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p> <p>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7. 제10조제5항 전 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p> <p>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p> <p>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p> <p>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 | |
|---|--|--|
| <p>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p> | <p>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 <p>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9.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자 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 <p>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2. 22.]</p> | <p>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③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는 그 변동량과 변동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4. 13.]</p> |
| | | <p>제9조의3(정기검사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

| | | |
|---|---|---|
| <p>제10조(폐기)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 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p> <p>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2022. 2. 3.] [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 2. 22.]</p> | <p>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① 영 제14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7.]</p> <p>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7.] [전문개정 2012. 4. 13.]</p> |
|---|---|---|

| | |
|--|--|
| | <p>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2. 22.]</p> |
| | <p>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p> |
| | <p>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p> |
| | <p>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p>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p> <p>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p> <p>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과학연구소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p>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2.]</p> | <p>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조사 사업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 <p>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2. 3.></p> <p>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 3. 23.></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0. 31., 2020. 8. 11.></p> <p>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p> <p>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p> <p>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 병원체</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31., 2020. 8. 11.></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2조(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p>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 감독에 관한 자료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p>제12조의2(자료 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 <p>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보유량 등의 신고</p> <p>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② 단일유기화학물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③ 특정화학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자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3조 삭제</p> | |
| <p>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p> <p>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개정 2013. 3. 23.></p> <p>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설 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p> <p>3. 법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p> <p>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2. 2. 22.]</p> | |

| | | |
|--|---|--|
| <p>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 |
| <p>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查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②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 | |
|---|--|--|
| <p>제18조(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p>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6장 보칙</p> <p>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p> | | |

| | | |
|--|--|--|
| <p>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 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p>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 | |

| | | |
|--|--|--|
| <p>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사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양 등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일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7장 벌칙</p> <p>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개정 2017. 3.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p>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 | |
|---|--|--|
|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11. 4. 14.]</p> | | |
| <p>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 | | |
|--|--|--|
|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2. 3.></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p> | | |
|--|--|--|